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3-1-17

규정번호 3-1-17
제정일자 2011.1.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9차 개정
관리부서 예산감사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 제46조의3(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)에 의하여 우리대학 등록금 책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및 임기)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기획실장·교무처장·학생지원처장·사무처장·예산감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재학생 4인, 외부전문가 1인, 학부모 또는 동문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3.26., 2018.08.27.)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 대표에게 서면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며,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또한, 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(항신설 2021.01.21.)

제3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, 업무를 총괄한다.(항번호신설 2022.06.08., 개정 2024.7.24)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항 신설 2022.06.08., 개정 2024.7.24)

제4조(추천 및 위촉)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조신설 2021.01.21.)

1.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행정업무는 기획실 예산감사팀에서 담당한다.
2. 재학생 · 학부모 또는 동문 위원은 학생지원처 학생복지팀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.
3. 외부전문가 위원은 사무처 총무회계팀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등록금심의위원회 기능)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조변경 2021.01.21.)

1. 등록금 상한제에 의한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2.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
3. 기타 등록금 책정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
4.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.(조변경 2021.01.21.)

1.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
2.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(개정 2022.06.08.)

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건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.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(항추가 2018.02.26., 개정 2018.03.26., 2022.06.08.)

1.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: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(호추가 2022.06.08.)
2. 회의 자료 :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송부(호추가 2022.06.08.)

제7조(의결)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, 의결한다.(조변경 2021.01.21.)

제8조(회의록) ①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조변경 2021.01.21.)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항추가 2018.02.26., 개정 2018.03.26)

제9조(업무관리 및 간사) 등록금심의위원회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담당직원을 간사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, 조변경 2021.01.21)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직제규정) <2013.7.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6> <생략>

<7>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“예산감사팀장, 학생처장”을 “기획·예산팀장, 학생지원처장”으로 하고, 8조의 “예산감사팀, 예산감사계장”을 “기획·예산팀, 기획·예산계장”으로 한다.

<8> - <30> <생략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·제2항)